

EU, 공동농업정책 단순화 행동계획

김 정 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0월초 그 동안 진행했던 공동농업정책(CAP) 단순화 작업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CAP 단순화 행동계획(Simplification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Action Plan)’을 발표했다. CAP 단순화 과정은 EU의 지속적인 농업·농촌 정책 혁신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행동계획을 제안하고 있는 EU 집행위원회 문건을 발췌 정리한다.

1. CAP 단순화 진행 경과

EU의 CAP 단순화 행동계획은 우선 기술적 측면에서의 단순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술적 단순화’라는 개념은 정책의 토대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군살을 빼고 비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법규의 틀, 행정 절차, 관리 메커니즘 등을 수정함으로써 농업 개혁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2005년 10월 코뮤니케를 통해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이 행동계획은 EU 회원국들과 이해 당사자들 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단순화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skkjs@krei.re.kr 02-3299-4252

1.1. 논의 과정에서 제안된 다양한 단순화 조치 실행

EU 집행위원회 농업총국은 2005년 10월 19일 CAP 단순화에 관한 코뮌িকে를 발표한 이후,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실행했다.

- CAP 단순화를 위한 행동 계획 준비
- CAP 메커니즘으로 인해 농업인들에게 부과되는 행정적 비용 분석
- 유럽 단일공동시장(Community Market Organization,) 관련 규정 준비
- CAP 단순화 관련 실태 자료 발간
- CAP 단순화를 위한 아이디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회원국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 CAP 단순화 컨퍼런스(conference) 준비 : EU 집행위원회 농업총국은 2006년 10월 3, 4일에 브뤼셀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컨퍼런스의 목적은 모든 관련자들(EU 집행위원회, 회원국, 유럽 의회 의원, 기타 기관, 이해당사자 조직, 학계 등)이 CAP 단순화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 법률 조항 정비 : EU 집행위원회가 2005년 10월 발표한 코뮌িকে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농업 관련 법률 조항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총국은 쓸모없는 법률 조항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폐기할 계획이다.

2005년 코뮌িকে에서 언급된 EU 집행위원회 농업총국의 조치 계획들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의 농업보조 규정 단순화
 - EU 집행위원회는 이에 관한 초안을 작성했다. 그러나 이 초안은 좀더 검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 (2) 계란의 마케팅 기준과 관련된 규정 단순화
 - EU 이사회(EU Council) 규정이 2006년 6월에 채택되었다(Council Regulation EC No. 1028/2006).
- (3) 수입 허가제에 의한 농산물 수입 관세 쿼터 관리 단순화 :

- 2006년 7월에 EU 집행위원회 규정이 마련되었다(Commission Regulation EC No. 1301/2006).
- (4) 여러 가지 정책 부문별 개혁 일정에 따른 단순화 가능성 검토
- 특히 과채류 부문에서의 기술적 기준을 검토하고, 그것과 기존 국제 기준의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마케팅 기준과 관련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담은 제안을 간단하게 발표할 계획이다.

1.2. CAP의 모든 관련자들을 위한 더욱 단순화된 법규 틀

CAP 단순화의 주요 목표는 법규의 틀을 수정·보완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정·보완 작업을 통해 이해당사자들과 농업인들이 보다 단순화된 법규 틀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CAP을 준수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 농기업, 회원국 관계 공무원들을 돕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 공공기관, 경제인 등의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1) 2003년 CAP 개혁에 의해 시작된 수평적 접근방법을 확장함으로써 CAP의 법률적 환경을 단순화해야 한다. 수평적 접근방법이란 기존 정책 수단이나 메커니즘의 주요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시장 정책 관련 규정들을 서로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집합으로 묶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1개의 기본 법률들이 이루고 있는 기존 구조를 대체하는 수평적 공동시장조직(CMO)을 채택하는 것은 CAP 단순화 전략의 핵심이다. 단일 공동시장조직에 관한 제안서는 아직도 초안 상태이다. 2006년 12월에 EU 집행위원회가 채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집행위원회가 채택하고 난 후 EU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단일 공동시장조직 관련 법안은 2003년 CAP 개혁 때에 취했던 수평적 접근방법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이다.
- 와인, 과일, 채소, 바나나의 경우 구체적인 정책 검토가 진행 중이며 가까운 장래에 검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따라서 이 품목들은 2006

년 12월의 첫번째 공동시장조직 관련 제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 단일 공동시장조직 제안은 기존 법규들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단일 공동시장조직 관련 법안에는 현재의 EU 규정 No. 1184/2006에 명시되어 있는 농업 부문 수평적 경쟁 및 국가 보조금 관련 규정들이 포함될 것이다.

- (2) 농업인의 행정적 부담 경감 : 농업총국은 CAP과 관련한 농업인의 행정적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2003년 CAP 개혁 때에 도입된 단일 직접지불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인의 행정적 부담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2006년 6월에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2007년 중반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연구의 대상 회원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덴마크, 독일 등이다. 이 국가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단일 직접지불제의 다양한 실행 실태들을 포괄하여 검토하기 위함이다.

2. 행동계획

2.1. 배경과 기획

행동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 농업총국은 광범위한 제안 내용들을 검토했다.

- (1) 2006년 2월 17일에 CAP 단순화 관련 전문가 1차 토론에서 회원국들에게 2006년 3월 17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EU 집행위원회는 상당한 양의 구체적인 제안들을 접수했으며, 현재 작성중인 초안에 반영했다(1단계 검토).
- (2) EU 이사회, EU 웹사이트의 공공 자문(public consultation)을 통해 접수된 회원국들의 제안들도 검토했다.
- (3) EU 집행위원회 농업총국 실무진이 제출한 단순화 제안 또한 검토했다.

이상과 같은 검토 결과를 토대로 2개의 행동 계획 초안을 마련하였고, 2006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친 CAP 단순화 관련 전문가 토론에서 논의했다. 또한 행동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06년 10월 3, 4일에 ‘CAP 단순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2. 기술적 단순화에 초점을 맞춘 행동계획

CAP 단순화 행동계획은 기반이 되는 정책들을 변경함 없이 CAP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EU 이사회가 결정한 ‘기술적 단순화와 정책 단순화의 명확한 구별’이라는 지침에 근거한 것이다.

‘기술적 단순화’는 정책의 토대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군살을 빼고 비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법규의 틀, 행정 절차, 관리 메커니즘 등을 수정함으로써 농업 개혁을 보완하는 것을 뜻한다. ‘정책 단순화’는 농업 지지 정책수단들과 농촌개발 정책 수단들을 개선함으로써 복잡성을 줄이는 것을 뜻한다. 단순한 형태를 가진 정책을 개발함을 의미할 수 있다. 이 경우 영향 평가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자문과 초기의 모든 노력들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EU 집행위원회는 단순화해야 할 정책 수단들의 목록을 도출했다. 구체적인 정책 수단들에 대해 단순화 조치를 취할 시기를 정했다.

3. CAP 단순화를 위해 제안된 구체적인 수단들

EU 집행위원회 농업총국은 농업인, 농산물 유통 종사자, 회원국 행정기관 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게 될 법률 개정 제안 20개를 행동계획에 포함시켰다. 이 내용은 회원국의 전문가들, 일반 대중, EU 집행위원회 농업총국 실무진이 제안했던 것들이다. 이것들은 관련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기술적 변화를 담고 있다. 그 중 주요 제안 11개를 소개한다.

3.1. 수출 환급금 산정을 위한 근거 자료 제출 단순화

EU 역외 국가에 특정 농산물을 수출할 경우 수출 환급금(export refund)이 지불되고 있다. 수출 환급금 산정률(export refund rate)은 해당 농산물의 수출 목적지나 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현행의 수출 환급금 제도는 특정 농산물에 대한 수출 환급금 산정률을 정하기 위해 해당 농산물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문서들이 그 근거자료로 제출되고 있다. 특히, 구매자들이 작성한 서류 사본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는 컴퓨터로 작성한 정보들로 그 서류들을 대체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 (1) 관련 부문 : 수출 환급금 제도와 관련된 모든 행위자
- (2) 관련 법률 / 정책 : EU 규정 EC No.800/1999 제16조 및 제17조, 수출 환급금과 관련된 수출 사실 증명 자료의 대체 또는 면제
- (3) 단순화 조치 유형 : 수평적 접근방법
- (4) 구체적인 조치 내용
 - 수출 환급금과 관련하여 규정된 수출 사실 증명 관련 법규 개정
 - 범위 : 수출 환급금을 수령하는 농산물 수출 행위
 - 제16조 1항은 수출자들이 제3국의 구매고객이 작성한 문서 사본을 증명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어떤 조건에서는 종이로 작성된 문서 사본을 컴퓨터로 작성한 정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7조는 회원국들이 수출 목적지가 어디인가에 따라서는 특정 조건 하에서 제16조의 의무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 관련 문서만 요구된다. 가능한 한 그러한 적용 예외 사례들이 더 많아지도록 할 것이다.
- (5) 단순화의 효과
 - 수출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 경감
 - 수출 환급금 지불 기관의 관리 절차 간소화
- (6) 단순화 조치 시기 : 2007년

3.2. 수출 허가 신청

현재, 수출자가 수출 환급금을 요구할 때에는 수출이 가능해진 시점에서 사전에 수출 인증서를 신청해야만 한다. 수출 인증서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이 인증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유하고 사본을 수출자에게 보내도록 제안을 하고 있다. 수출 환급금은 관세 사무소로부터 해당 수출 상품이 EU를 떠났음을 통지하는 간단한 전자 메시지를 받기만 하면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수출 인증서 발급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인증서 취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 (1) 관련 부문 : 수출 허가에 관련된 모든 행위자
- (2) 관련 법률 / 정책 : EU 규정 EC No.1291/2000 제25조, 수입 및 수출 허가제의 적용에 관한 세부 지침 부가 및 농산물 수출 허가 인증서의 사전 발부
- (3) 단순화 조치 유형 : 수평적 접근방법
- (4) 구체적인 조치 내용
 - 수출 허가 신청 관련 법규 개정
 - 범위 : 수출 허가제를 통해 관리되는 농산물 수출 행위
 - 제25조를 개정하여 신청자가 수출 인증서를 받기 위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수출 인증서를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해당 기관은 수출 인증서 기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컴퓨터 파일 형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신청자에게는 그 사본을 발부하도록 한다.
- (5) 단순화의 효과
 - 수출자의 행정적 부담 경감
 -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 감소
- (6) 단순화 조치 시기 : 2007년

3.3. 에게해 지역 소규모 도서 지역에서의 직접지불체계 단순화

에게해 지역의 소규모 도서 지역 농업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특수한 사회·경제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지불제가 실행되어 왔다. 이 수단은

특정 농산물과 농업생산 수단 측면에서 예게해 도시 지역이 처해 있는 예외적인 지리적 상황으로 인해 농업인이 경험하고 있는 자연적 불리점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직접지불제 프로그래밍 체계 안에서 그 모든 구체적인 지원 수단들을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 (1) 관련 부문 : 원격 지역에 대한 지원
- (2) 관련 법률 / 정책 : 유럽 이사회 규정 EEC 2019/93, 특정 농산물 관련 예게해 소규모 도서 지역에 대한 특별 조치 도입
- (3) 단순화 조치 유형 : 수평적 접근방법
- (4) 구체적인 조치 내용
 - 유럽 이사회 규정 EEC 2019/93 및 유럽 이사회 규정 EC 1782/2003 제 70조, 제71조 개정
 - EU 집행위원회 규정 EC 2837/93, 2958/93, 3063/93, 3175/94, 1517/2002, 1999/2002, 2084/2004 폐지
- (5) 단순화의 효과
 -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은 복잡한 규정에 의하지 않고 대신 POSEI 스타일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로써 해당 지역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관련 행정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 (6) 단순화 조치 시기 : 2006년 3월에 기 제안

3.4. 농업생산과 연계된 보조금 지원에 있어 기준 필지의 문제 조정

2003년 CAP 개혁 이전에는 농업인들이 밀, 보리, 아마 등과 같은 특정 작물에 대해서 재식 면적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았다. 이러한 지원은 생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산울타리나 담장과 같은 경관 요소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산울타리나 담장 등과 같은 경관 요소들이 차지하는 지역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았고, 따라서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에서 배제시켜야 했다.

2003년 CAP 개혁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현재 농업인들은 토지에서 무엇이 생산되는가와 무관하게 토지를 이용한다면 직접지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경관 요소들이 직접지불 대상 지역 내에 포함된다. 그러나 생산과 연계된 직접지불의 경우(예 : 에너지 작물), 여전히 과거의 접근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경관 요소는 대상 지역에서 배제된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EU 회원국 정부들은 각 필지에 대해 두 종류의 자료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유지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어떤 지역이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불 대상 지역이라면 그 지역을 'X'라고 표시하고, 해당 필지가 생산과 연계된 보조금 지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경관 요소들이 들어 있는 면적만큼을 X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러한 구별을 없앨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이든 경관 요소들이 지원을 받기에 합당한 지역 안에 포함될 것이다.

- (1) 관련 부문 : 직접지불제
- (2) 관련 법률 / 정책 : EU 집행위원회 규정 EC 796/2004 제30조. CAP 하의 직접지원 정책에 관한 공통 규정 수립 및 농업인에 대한 특정 지원정책에 관한 공통 규정 수립과 관련하여, EU 이사회 규정 EC No. 2782/2003에 명시된 교차 준수, 모듈레이션(modulation), 종합적 관리체계 등에 대한 상세한 지침 부가
- (3) 단순화 조치 유형 : 수평적 접근방법
- (4) 구체적인 조치 내용
 - EU 집행위원회 규정 EC 796/2004 제30조항 개정
 - 필지 안에 경관 요소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지 결정 여부는 해당 보조금이 농업생산과 연계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보조금이 농업생산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 경관 요소들이 보조금 지급 대상지로 포함될 수 있다. 보조금이 농업생산과 연계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경관 요소들은 보조금 산정에서는 배제된다. 예를 들어 하나의 필지에 대해 농업인이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보조금과 에너지 작물 보조금 두 종류를 함께 신청한다면, 행정기관은 보조금 산정을 위해 해당 필지를 구별하여 계산할 수 있다.
- (5) 단순화의 효과

- 정부행정기관과 농업인 모두의 작업량을 줄여주는 관리 조건 마련
- (6) 단순화 조치 시기 : 2006년 후반기

3.5. 기상 이변이 있는 경우 휴경지를 사료작물 재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

휴경 의무에 걸려 있는 토지는 효과적으로 휴경되어야 한다. 농업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상업적인 목적 하에 식품이나 사료를 생산해서도 안 된다. 다만, 예외적인 기상 조건 하에서는 EU 회원국 정부가 EU 집행위원회에 해당 규정 적용 예외를 요청하고 사료작물 재배 목적으로 휴경지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얻는 절차는 시간을 소모시키며, 실제로 농업인들은 스스로 해당 휴경지를 사료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게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의사결정 기간을 단축하고 농업인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외적인 기상 조건(기상 이변) 여부와 해당 휴경지가 사료작물 재배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게 한다.

- (1) 관련 부문 : 직접지불제
- (2) 관련 법률 / 정책 : EU 집행위원회 규정 EC 795/2004 제32조. CAP 하의 직접지불 정책에 관한 공통 규정 수립 및 농업인에 대한 특정 지원정책에 관한 공통 규정 수립과 관련하여 EU 이사회 규정 EC No. 1782/2003 관련. 단일직접지불제 실행에 대한 상세한 지침 부가
- (3) 단순화 조치 유형 : 부문별 접근방법
- (4) 구체적인 조치 내용
 - EU 집행위원회 규정 EC 795/2004 제32조항에 사료작물 재배 목적으로 휴경지를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예외적인 기상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회원국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명시
 - 현재 회원국들은 특정 기상 상태가 예외적인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를 EU 집행위원회의 승인 하에 판단해야 한다.

(5) 단순화의 효과

- EU 회원국 정부가 집행위원회에 특정 기상 환경을 예외적인 조건이라고 선언하기에 합당한지를 판단할 것을 요청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이로써 농업인들이 해당 토지에 사료작물 재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게 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단축하게 될 것이다.

(6) 단순화 조치 시기 : 2006년 후반기

3.6. 에너지 작물에 대한 지원 조건 변경

2003년 이전에는 에너지 작물에 대한 지원이 제한된 형태로 있었다. 농경지가 지원을 받아 휴경 상태에 들어가 있다면, 해당 경지를 비식품 농산물(예: 에너지 작물)을 생산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었다. 농업인들이 에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한 작물을 사료용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주로 평지), 휴경지에서 비식품 작물을 생산하기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부과했다.

2003년 CAP 개혁과 더불어 에너지 작물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 도입되었다. 휴경지에서의 비식품 작물 생산에 적용되었던 과거의 조건들이 새로 도입된 에너지 작물 보조금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지금은 휴경지의 불법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던 과거의 적용 조건이 지금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 작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는 농업인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들을 간소화할 것을 제안한다.

- (1) 관련 부문 : 직접지불제, 에너지 작물 재배 지원
- (2) 관련 법률 / 정책 : EU 집행위원회 규정 EC 1973/2004 제8장. 원료 생산을 위한 휴경지 활용 관련 EU 이사회 규정 EC 1782/2003에 대해 세부 지침을 부가
- (3) 단순화 조치 유형 : 부문별 접근방법
- (4) 구체적인 조치 내용
 - EU 집행위원회 규정 EC 1973/2004 제8장 개정

- 상기 규정 제8장의 초안을 작성할 때, 휴경지에서의 비식품 생산에 대한 지원 조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그 조건을 적용한 초기 몇 해 동안 것처럼 엄격한 조건들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관련 조항들을 단순화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다. 에너지 작물에 대한 지원은 휴경에 대한 지원과 연계될 수 없다.

(5) 단순화의 효과

-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이 완화될 것이다. 따라서 통제 또한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될 것이며, 이는 농업인과 정부 행정기관 모두에게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다.

(6) 단순화 조치 시기 : 2006년 후반기

3.7. 직접지불 대상 자격 조건 변경

올리브유 부문을 개혁하기 전에는 1998년 5월 이전에 식재된 올리브 나무로부터 생산한 올리브유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졌다. CAP 개혁으로 인해 생산과 연계된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 모두 환경적 편익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정책이 바뀌었다. 생산과 지원이 연계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나, 1998년 5월 이전에 식재된 올리브 나무에 대한 지원이라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지금도 1998년 이후 식재된 올리브 나무는 직접지불 대상이 될 수 없다. EU 회원국과 농업인들에 대한 모니터링 비용을 줄이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 조건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1998년 5월 이후에 식재된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도 직접지불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1) 관련 부문 : 직접지불제

(2) 관련 법률 / 정책 : EU 이사회 규정 EC No 1782/2003 제51조, CAP 하의 직접지불수단에 대한 공통규정 확립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에 관한 조항

(3) 단순화 조치 유형: 수평적 접근방법(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불)

(4) 구체적인 조치 내용

- 상기 제51조는 영년생 작물을 제외하고는 1998년 5월 1일 이전에 식재된 올리브 나무를 갖고 행하는 모든 농업적 활동에 대해 직접지불

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을 개정하여 올리브 재배지에 대한 지원 조건을 일반적인 직접지불 조건 안에 포함시킨다.

(5) 단순화의 효과

- 회원국 행정당국에게는 이러한 조항이 토지 이용상태를 더 용이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올리브 나무가 1998년 5월 1일 이전에 식재된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 농업인에게는 시장에서의 수익증대 가능성이 가장 큰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자유를 확대시켜 줄 것이다.

(6) 단순화 조치 시기 : 2006~07년

3.8. 양봉에 대한 지원 수단

양봉 분야에 대해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원회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수단들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각 정책수단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확정되어야 한다. 정책수단들 간의 예산 할당 변화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지원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그리고 회원국들이 양봉업자들의 요구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양봉 지원 프로그램 내의 다양한 지원정책 수단들 사이에 자금 집행 변경이 유연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1) 관련 부문 : 양봉

(2) 관련 법률 / 정책 : EU 집행위원회 규정 EC No 917/2004

(3) 단순화 조치 유형 : 부문별 접근방법

(4) 구체적인 조치 내용

-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회원국별 양봉 지원 프로그램은 그 안에 포함된 구체적인 정책수단들에 대해 재정 지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특정 조건 하에서는 각 항목들 간의 예산 증감이 최대 20%까지 가능하다. 예산을 크게 변경한다는 것은 해당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수정함을 의미한다. 20%라는 변경 한도는 해당 지원 프로그램의 유연한 실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20% 규정'을 철폐하

고 집행위원회에 예산 변경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한다.

(5) 단순화의 효과

- 이러한 조치로 회원국 행정당국들의 절차가 단순화할 것이다. 이로써 양봉 지원 프로그램이 더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예산 배분이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게 된다.

(6) 단순화 조치 시기 : 2006~07년

3.9. 수출 환급금 모니터링 제도 단순화

수출 환급금 지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의 틀 안에서 회원국들은 공식적인 수출 서류신청 절차가 완료된 시점에서 수출 환급금 지급 대상 상품을 물리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 점검이 이루어진 후에야 당국이 해당 상품 수출을 승인할 수 있다. 회원국들은 매년 매 상품부문마다 그리고 관세사무소마다 약 5% 정도의 상품에 대해 물리적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최초의 단순화 조치는 1994년에 이루어진 바 있다. 회원국이 리스크 분석을 할 경우 물리적 의무점검 비율을 상품부문 당 2%로 낮출 수 있게 했다. 이제 두 번째 단순화 조치를 제안한다. 모든 수출업체에 대해 리스크 분석을 시행하는 회원국은 관세 사무소 당 물리적 의무점검 비율을 준수할 필요 없이 모든 상품 부문에 대해 평균 5%의 물리적 의무점검만 해도 되도록 제안한다.

(1) 관련 부문 : 수출 환급금을 수령받는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모든 부문

(2) 관련 법률 / 정책 : EU 이사회 규정 EC No 386/90

(3) 단순화 조치 유형 : 수평적 접근방법

(4) 구체적인 조치 내용

- 수출 농산물에 대한 물리적 점검 관련 규정 개정

(5) 단순화의 효과

- 수출 품목에 대한 물리적 점검을 시행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단순화한다.

(6) 단순화 조치 시기 : 2007년

3.10. 농산물시장정책 수단과 관련된 단순화

CAP 중 시장개입 정책들을 관리하기 위해 매일 여러 개의 법률 조항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된다. 이러한 법률 조항들은 회원국 행정당국과 경제 행위자들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수입관세쿼터 할당, 수출 환급금 지급 요청, 공공비축물자 처분을 위한 신청 등과 같은 시책들이 있다. 각각의 부문별 시장에서 동일한 정책수단에 대해서도 각각 고유한 관련 법규가 적용되어 왔다. 이제 그러한 법규를 단일한 토대 위에서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표준 규정은 경제 행위자나 회원국 행정당국에 대해서 CAP 수단을 관리하는 작업이 더욱 깔끔하게 되도록 만들 것이다.

- (1) 관련 부문 : 수입허가제에 의해 관리되는 수입관세 쿼터, 수출환급금, 공공비축 등과 관련된 모든 부문
- (2) 관련 법률 / 정책 : 공동시장조직 관련 규정
- (3) 단순화 조치 유형 : 수평적 접근방법
- (4) 구체적인 조치 내용
 - 여러 개의 부문별 규정을 수평적인 규정 하나로 대체하고 관리 메커니즘을 단순화한다.
- (5) 단순화의 효과
 - 회원국 정부와 경제 행위자들의 입장에서 관리 메커니즘이 명료하게 바뀔 것이다. 그리고 오류의 위험성을 줄일 것이다.
- (6) 단순화 조치 시기 : 2007년 중반

3.11. 농업회계 단순화

1999년 1월 이후 CAP 집행과 관련된 가격 표시와 보조금 표시는 모두 유로화를 사용하도록 정착되었다. EU의 농업부문 보조금은 각 회원국 정부들을 통해 분배된다. 1999년 1월 1일부로 유로화로 표시하도록 확정되면서 회원국 통화와 유로화의 환율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졌다.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은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유로화로 지급되었

고 이 경우에 회원국 내에서 환율 제도가 사용되었다. 2003년 CAP 개혁과 더불어 농업회계체계가 개정되었다. 그와 동시에 직접지불 시스템이 확립되었다. 새로운 직접지불 시스템은 단일지불요청에 근거한 것이고, 언제나 유로화 단위로 표시되었다. 모든 직접지불금액에 대한 환율은 보조금이 할당되는 해의 10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통일되었다. 그리고 환율 수치는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이 공표한 가장 최근의 것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농업회계체계의 단순화는 직접지불제 외에도 다른 정책에서 시행되는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도 진행될 것이다.

(1) 관련 부문 : 보조금이 지급되는 모든 부문

(2) 관련 법률 / 정책 : EU 이사회 규정 EC No 2799/98 제9조

(3) 단순화 조치 유형 : 수평적 접근방법

(4) 구체적인 조치 내용

- 상기 제51조는 영년생 작물을 제외하고는 1998년 5월 1일 이전에 식재된 올리브 나무를 갖고 행하는 모든 농업적 활동에 대해 직접지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을 개정하여 올리브 재배지에 대한 지원 조건을 일반적인 직접지불 조건 안에 포함시킨다.

(5) 단순화의 효과

- 회원국 행정당국에게는 이러한 조항이 토지 이용상태를 더 용이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올리브 나무가 1998년 5월 1일 이전에 식재된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 농업인에게는 시장에서의 수익증대 가능성이 가장 큰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자유를 확대시켜 줄 것이다.

(6) 단순화 조치 시기 : 2006~07년

참고자료

http://ec.europa.eu/agriculture/simplification/actionplan_en.pdf 발췌정리